

會 則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컨트리클럽은 중부컨트리클럽이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JUNGBU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목 적)

본 클럽은 애경중부컨트리클럽주식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국제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51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 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특별회원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4. 평일회원
5. 외국인회원
6. 특별우대회원
7. 기타회원

제5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중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다.

제6조(특별회원)

1. 특별회원은 본 클럽과 골프계에 공로가 있는 인사중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다.
2.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만 회원의 대우를 받는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승인받은 자로 하며,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구좌당 1인 이용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평일회원)

평일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자로 평일에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회원)

외국인 회원은 외국인으로서 정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칙에 의거 입회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우대회원)

특별우대회원은 개인또는 법인회원으로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자로하며, 예약 및 우대조건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제11조(기타회원)

1.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정한다.
2.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회사가 정한다.

제12조(회원의 존속기간)

1. 정회원 의 존속기간은, 각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1차평일회원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하며, 2차평일회원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이내에, 쌍방이 입회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13조(입회신청)

1.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법인으로 입회신청을 할 때에는 기명식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3. 회원의 재입회는 본 클럽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정회원 및 특별우대회원은 5년, 1차평일(가족)회원은 3년, 2차평일 가족회원은 5년을 거치하며,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또한 회사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다만,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이용)

골프장은 회원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내장객에게 이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 제한)

천재지변 또는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본 회칙 및 클럽의 규칙, 대한골프협회 에서 제공한 골프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원권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4. 주소,연락처변경, 회원 신상변동 등 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때
5. 회원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련의 행위로 회사 또는 타 회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
2. 탈퇴
3. 제명
4. 회원사망 및 법인의 해산

제19조(회원권 양도)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 클럽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클럽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클럽은 입회가 결정된 양수도, 승계, 법인회원기명인 변경 및 기타회원 등 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밟은 후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권의

양도, 양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탈 퇴)

1. 탈퇴를 희망 할 시 소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입회 후 14조 2항에 따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가 탈퇴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21조(회원관리)

1. 회원은 모든 개장일에 회사가 정한 회원의 자격으로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장객을 동반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이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을 성실하게 준수 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주소, 연락처변경, 기타 회원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본 클럽 홈페이지 또는 당클럽에 즉시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6. 14조2항이 경과되도록 갱신신청이 없을 시에는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
7.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2조(이사회)

1. 본 클럽의 이사회라함은 애경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한다.
2. 이사회는 골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결의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건전하고 원활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5장 경기규칙

제24조(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외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5조(로칼룰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로칼룰의 제정 및 개정 경기규칙 변경 및 임시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관 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의 개폐는 회사 이사회의 의결로서 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해석에 있어 의문이 있을때는 회사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8년 06 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21년 02 월 01일부터 시행한다.